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9-12호

오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성길용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고령화가 심화되고 고령운전자 및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실정이기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9년 3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고령운전자 지원)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비는 최초 1회만 지원하며 오산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의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